

특허 Q&A



여기서 잠깐



Q.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출원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변경”으로 체크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국 지정에 따른 발명자의 출원인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발명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의 명의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출원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 정보변경”으로 체크한 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생략정보를 기재하고,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신고시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명기해야 합니다.(Rule 4.16)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